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502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김형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문성호, 민병주,
유만희, 윤종복, 임춘대,
최민규, 허 훈 의원(14
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 축제 지원 사업은 지역문화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그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축제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제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축제의 경우 공익성보다 특정 단체나 개인의 사익 추구로 비쳐질 소지가 있으며,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축제 지원 대상을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로 명확히 하되, 공익성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나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축제 지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축제 지원 대상을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로 한정함(안 제16조제2항)
- 나. 공익성 훼손 우려가 있거나 사익 추구 목적이 예상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2항제1호)

다.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제2호)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제 지원은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다.

1. 해당 축제 지원으로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가 우려될 경우
2.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① (생략) <u><신설></u></p> <p>② ~ ⑤ (생략)</p>	<p>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축제 지원은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다.</u></p> <p>1. <u>해당 축제 지원으로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가 우려될 경우</u></p> <p>2.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u>해당하는 단체</u></p> <p>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제2항 축제 지원은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로 하며, 제1호 해당 축제 지원으로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가 우려될 경우, 제2호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지원 할수 없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으로, 이는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에 해당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권 봉 수

☎ 02-2180-7953

e-mail : shibedoge0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